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3회 (03/25)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」상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도시·군계 획시설사업 시행도 가능하다.
- ②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,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.
-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·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.
- ⑤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가 없을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결정은 실효된다.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」상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.
-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등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, 매수의무자는 도시·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, 3천만원을 초 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동의 없이도 도시·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⑤ 도시·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,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시· 군계획조례로 정한다.

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보호규정이라 할 수 없는 것은?

- ① 서류의 공시송달인정
- ② 국·공유지 처분 제한
- ③ 관계서류의 무료 열람
- ④ 타인토지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
- ⑤ 토지 등의 수용・사용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3회 (03/25)

- 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사항이다. 옳은 것은?
 - ① 단계별 집행계획이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 고시 3개월 이내 수립되어야 하며 해당 단계별집행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.
 - ② 도시·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·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시까지 도시·군계 획시설 설치 사업이 없는 경우로,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 수립되거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, 그리고 개축과 재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다.
 - ③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·고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·군계획시설사 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.
- ④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결정 2년 이내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·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.
- ⑤ 도시·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청구 후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나 매수 결정 2년 이내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시설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허가 받아할 수 있다.
- 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 계획시설사업이 1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에 부합할 때 매수를 청구하였는데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다. 옳지 않은 것은?
- ① 2층의 한의원
- ② 3층의 단독주택
- ③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
- ④ 바닥면적 200 m²의 슈퍼마켓
-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㎡의 우체국
- 6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?
 - □. 개발행위허가의 취소
 - ㄴ. 비행정청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취소
 - ㄷ. 실시계획의 인가 취소
 - 리. 도시·군기본계획승인의 취소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3회 (03/25)

객관식진도학습 정답

1. ⑤

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실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.

2. ①

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'대'인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,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3. 4

타인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것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그에 관련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등의 보호규정이다.

4. ⑤

- ① 단계별집행계획이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. 단계 별집행계획은 예산 및 보상에 대한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.
- ②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매수청구 후 미 매수시나 매수기간 내에 매수하지 않았을 때 이다
- ③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·고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지목이 대인 경우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해 매수청구 할 수 있다. 단순히 토지소유 자 모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
	사유발생	일정한 행위의 허가가 가능한 사항
보호1	사업이 없는 경우로, 단계별집행계획이 미 수립되거	2.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
보호2		 3층 이하의 단독주택(순수 단독주택) 3층 이하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,제2종근린생활시설(노래연습장,다중생활시설, 안마시술소,단란주점은 제외) 조례로 정하는 공작물

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 3회 (03/25)

5. ③

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"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,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된다.

6. ②

구속력이 있는 처분을 할 때 소명을 사전에 듣는 제도를 청문이라 한다. 여기서 도시·군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으니 그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청문을 하지는 않는다. 현행법령상 3가지만이 청문 대상이 된다.